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◇ **행정규칙명:**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

◇ **제·개정 이유:** 전력량 측정 시 계량기의 개봉 없이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고, 기존 봉인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사업자와 검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

◇ **주요내용:**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에 적산전력량 비교법 도입 (제1-1절 3.35, 부속서 F 등), 기존 봉인 유효성 인정 (제1-1절 5.4, 제2장 3.2 등), 양방향 충전 등 용어 정비 (제1-1절 1, 3.3 등)